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. 4. 2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8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4. 15.

다. 상정일자: 제2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6. 4. 22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징수과장 황은하】

가. 제안이유

-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·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24시 비대면 민원서비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수수료 면제대상 추가(안 제6조제5항 신설)
 - ⑤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.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
 - 2)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: 2026. 3. 5. ~ 2026.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 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가. 개정 목적 및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, 같은 해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¹⁾에서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,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1) 제28조(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(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·고시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-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·감면을 권고한 바 있으며(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-280, 2024.2.15.), 본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사항임.
- 주민등록 등·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 무료이나,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. 이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의 수수료는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및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에 규정²⁾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자치구별 감면 여부에 따라 주민 부담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- 서울시 자치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운영 현황을 보면, 전면 무료로 운영하는 자치구가 10개, 일부 무료로 운영하는 자치구가 11개이며, 마포구는 현재 유료 자치구에 해당함.

■ 서울시 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징수 현황

구 분	자 치 구	비 고
무 료	강남, 강서, 관악, 광진, 구로, 동대문, 성북, 종로, 중구, 중랑	10개 자치구
일부 무료	강북, 금천, 노원, 도봉, 동작, 서대문, 성동, 영등포, 용산, 은평, 양천	11개 자치구
유 료	마포, 강동, 서초, 송파	4개 자치구

2)

【수수료 관련 규정】

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

제17조(수수료)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,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1. 주민등록표의 열람(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1건 1회에 300원
2.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(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·초본교부는 500원)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

제28조(증명서등의 수수료)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,000원으로 하고,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. 다만,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,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,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,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,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·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.

- 따라서 본 개정은 자치구 간 행정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 최근 비대면 행정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,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도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참고로 금번 개정안은 주민등록, 제적·가족관계, 지방세, 차량, 토지·지적·건축, 농촌·수산 분야 등 총 45종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,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원 수입에 해당하는 민원은 제외됨.

■ 감면 대상: 유료발급 민원서류 45종

- 주민등록(2종), 제적·가족관계(10종), 지방세(18종), 차량(4종), 토지·지적·건축(9종), 농촌·수산(2종)

※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원수입으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 아님

나. 주요 내용

-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민원문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(안 제6조제5항)
 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
 -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하도록 규정

현행	개정안
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,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.</u>

다. 마포구 무인민원발급기 현황

- 마포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5대(동 16대, 구청 3대, 외부 6대)가 설치·운영 중이며, 외부 설치 장소는 공덕역, 합정역, 마포세무서, 서부지방법원, 등기국, 홍대입구역임.
- 발급 대상 민원은 총 123종으로, 이 중 주민등록등·초본 등 46종은 유료, 보건복지 분야 등 77종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.
- 2025년 발급 실적은 총 163,355건이며, 수수료 수입은 36,441천원으로 나타남. 2024년에는 총 169,188건이 발급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40,916천원으로, 최근 2년간 약 16만 건 내외의 발급 실적과 약 4천만 원 내외의 수수료 수입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.

■ **마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**

○ **설치 현황: 25대** (동 16대, 구청 3대, 외부 6대)

※ 외부: 공덕역, 합정역, 마포세무서, 서부지방법원, 등기국, 홍대입구역

○ **발급 수수료**

합 계	유 료	무 료	비 고
123종	주민등록등·초본 등 46종	보건복지 분야 등 77종	

○ **2025년 발급 실적**

(단위: 건/천원, 2025.12.31.기준)

구 분	합 계	세 입						무 료
		소 계	주민등록	가족관계 제적	지방세	지적 토지 건축	차량 농촌 수산	
건 수	163,355	133,764	74,383	47,959	5,646	5,236	540	29,591
금 액	36,441	36,441	9,669	22,395	1,245	3,004	128	-

○ **2024년 발급 실적**

(단위: 건/천원, 2024.12.31.기준)

구 분	합 계	세 입						무 료
		소 계	주민등록	가족관계 제적	지방세	지적 토지 건축	차량 농촌 수산	
건 수	169,188	135,091	76,504	47,767	5,902	4,371	547	34,097
금 액	40,916	40,916	14,489	22,584	1,177	2,527	139	-

-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·유지비 현황을 보면, 2026년 기준 유지보수비는 28,456천원, 소모품비는 44,925천원, 운영비는 9,972천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음. 이에 따라 수수료 수입은 운영비 일부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 수수료 면제 시행 시 일정 수준의 세입 감소는 불가피하나, 전체 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▣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비 현황

○ 유지보수비

대 상	소요예산	비 고
무인민원발급기 23대	26,956,000원	2026년 유지보수 용역 계약 금액
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유지보수료	1,500,000원	기기 1대당 5,000원
합계	28,456,000원	

※ 12월 교체한 무인민원발급기 2대는 1년 무상 유지보수

○ 소모품비

대 상	소요예산	비 고
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용지	10,000,000원	62,500원*200상자*80%
소모품	34,925,000원	토너, 편철심, 영수증 용지 등
합계	44,925,000원	

○ 운영비

대 상	소요예산	비 고
발급기 설치장소 임차료	1,440,000원	공덕역, 합정역
전기요금	432,000원	공덕역, 합정역
KT 전용회선료	8,100,000원	서부지법 등기소, 마포세무서, 홍대입구역
합계	9,972,000원	

라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무인 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-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면제는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추세에 부합하고 주민의 민원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 수수료 면제 시행 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증가에 따른 운영·관리 비용 증가 및 민원 수요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향후 이용 현황 및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 수수료 면제 시행 이후 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, 이용 실적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


국민권익위원회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제도개선 권고(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) 협조요청
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- 우리 위원회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제47조에 따라, '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'을 <붙임1> 과 같이 권고하나, 조처기한 내 제도개선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관리를 위해 세부과제별 '추진계획'은 <붙임2> 양식에 따라 2024. 3. 14.(목)까지, 세부과제별 '이행실적'은 <붙임3> 양식에 따라 조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인 2024. 8. 30.(금)까지('본인인증 방식 다양화' 과제 : 2025. 1. 31.(금)까지)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제도개선 의결서 1부.
 2. 제도개선 추진계획(양식) 1부.
 3. 단위과제별 이행실적(양식) 1부. 끝.

국민권익위원회



수신자 감사부서(권익위 제도개선 업무 담당부서)의 장

사무관	오세형	제도개선총괄 과장	김석준	권익개선정책 건립 2024. 2. 16. 국장	민성삼
협조자					
시행	제도개선총괄과-280	(2024. 2. 16.)	접수	감사담당관-1364	(2024. 2. 16.)
우	30102	서울특별시지치시 도울6로 20, 정부서울청사 7-2동(국민권익위원회)	/ www.acrc.go.kr		
전화번호	044-200-7218	팩스번호	044-200-7921	/ kudos1@korea.kr	/ 비공개
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. 내 삶이 달라집니다.

□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(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·고시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